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윗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④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2

국어 영역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나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치를 ②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시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②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는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한다.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보증과 이용후기를 활용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은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서, 해당 상품·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그 내용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는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초반부 독해]

※ 지문 초반부는 글의 화제를 도입하는 구간이다. 초반부에서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통해 "이 키워드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것이다"에 대한 힌트를 준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 주어지는 용어의 개념·정의는 글의 화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 지문 초반부라는 것은 "지문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화제)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는 나에게 투입되는 정보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 그 소재를 도입하기 위한 빌드업] 중 어떤 것인지를 간간하게 구분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해당하는 알맹이를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한다.

"글 시작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대상과 목적을 주고, 이로부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끌어내는군. 그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서술하려나? 그럴 거같은 한데 아직 확정은 못하겠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맞네. 일단 공정거래법의 활용인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초점을 맞춰 읽어야겠다."

+

[원칙적으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굳이 '원칙적으로'의 수식어를 덧붙여서 쓴 이유는, '원칙에 벗어나는 예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나 예외가 등장할 수 있으니 예외가 나오면 반응할 준비를 해야한다.

4. 윗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달리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②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
- 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기준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 4번 문항 해설 >

정답: ④

① : 지문 설명에서 쓴 바와 같이 공통 서술 범주에 입각한 비교, 대조를 능동적으로 해주고 넘어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공통점
형사처벌 -> 표시광고법만 해당

②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나열되는 식으로 주어질 때 넘버링 하면서 잘 따라 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④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

③ : 예외 잘 잡았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②또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⑤ : 3번 선지와 같이 예외 잘 잡았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④ 선지 판단의 근거]

추천, 보증에 대해 케이스를 둘로 나눴었다. 이때 넘버링 하면서 읽을 때 분리시켜 봤으면, 이 선지를 읽었을 때 "아, 두 케이스를 섞어 놓은 것이구나. 범주가 틀렸다."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 ④ ㉡은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 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 5번 문항 해설 >

정답: ④

① : 예외 잘 잡았으면 '작은'이 아니라 '큰' 경우라고 해야 맞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②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나열되는 식으로 주어질 때 넘버링 하면서 잘 따라 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②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

재판매 자격 유지 행위가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 재판매 자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가격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맞다.

⑤ : ㉠은 사업자 ⇔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 간에 일어나는 행위이고, ㉡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활용해서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④ 선지 판단의 근거]

지문에서 이용후기 광고의 정의를 잘 파악하고 넘어갔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가 직접 올린 이용후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 하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①(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에 전파된다. /②노드들은 (1)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2)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증한다. /③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④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⑤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초반부 독해]

※ 지문 초반부는 글의 화제를 도입하는 구간이다. 초반부에서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통해 "이 키워드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것이다"에 대한 힌트를 준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 주어지는 용어의 개념·정의는 글의 화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 지문 초반부라는 것은 "지문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화제)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는 나에게 투입되는 정보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 그 소재를 도입하기 위한 빌드업] 중 어떤 것인지를 간간하게 구분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해당하는 일행이를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

[내용]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시작하자마자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가 나오네. 기출문제의 빅 데이터 상 지문 초반부에 주어지는 용어의 개념·정의는 글의 화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으니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야겠어"

"이어서 **블록체인**과 **노드**의 정의가 등장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구체화하고 있네. 그럼 이 글의 화제가 블록체인 기술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어서 ①~⑤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1문단이 끝나네. 계속 나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블록체인 기술**로 모아지고 있어. 그러면 이 글은 초반부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궁극적으로 뭘 설명할지 주지는 않았고.. 그냥 앞으로 나오는 정보들을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블록체인 기술**라는 키워드에 어떻게 붙는지 판단해야겠다. 바로 다음 내용이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 확실해 지네."

[평가원이 지문을 쓸 때 사용한 장치,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법]

1. 용어의 개념·정의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개념·정의의 파트가 나오면, 해당 단어에 박스치고 필요하면 2~3번 정도 읽으며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용어가 무엇인지 알려준 이후에 평가원은 학생이 그 용어의 뜻을 안다는 전제 하에 글을 쓰기 때문이다.

2. 극단적 범주

양 극단에 있는 범주를 뜻하는 용어는 내용 파악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ONLY(다만, ~만, 오직 등) <-> ALL(모든, 항상 등)" 과 같은 워딩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그 극단적 범주를 일부러 의식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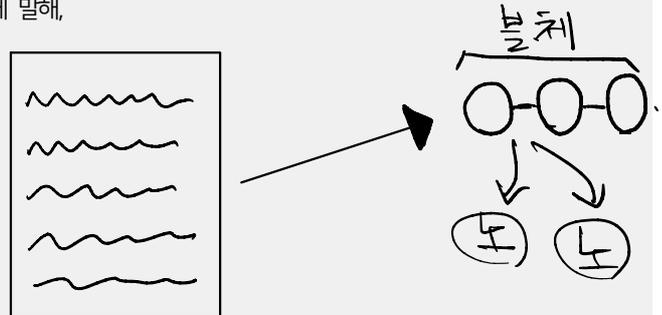
3. 순서·과정

평가원 지문에는 일련의 순서, 과정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의미 단위로 끊어 차례대로 넘버링하며 정리하는 것이 좋다.

4. 시각적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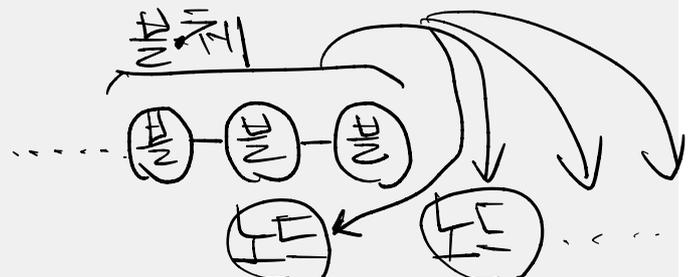
정보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가 보는 비문학 지문은 정보를 '글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문과 같이 어떤 물리적인 형태에 대한 정보를 글로 전달하는 것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그 정보를 시각적인 정보로 재구성한다.

쉽게 말해,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지문 초반부에 이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 사용될 정보이다. 근데, 아래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저 그림과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그런데 우리는 필기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 계속해서 저 과정을 반복하며 읽어 내려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옆에 정보의 형태를 '글->그림'으로 바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지문 독해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가)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①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②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③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④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이다. 바쟁은 ⑤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⑥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1)(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2)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젠슈타인이 대표적이다.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⑥깨뜨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는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롱 테이크는 하나의 숏이 1~2분 이상 끊김 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③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바쟁에 따르면,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바쟁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④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초반부 독해]

※ 지문 초반부는 글의 화제를 도입하는 구간이다. 초반부에서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통해 “이 키워드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것이다”에 대한 힌트를 준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 주어지는 용어의 개념 정의는 글의 화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 지문 초반부라는 것은 “지문에서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화제)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문 초반부에는 나에게 투입되는 정보가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바 / 그 소재를 도입하기 위한 빌드업] 중 어떤 것인지를 간간하게 구분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해당하는 알맹이를 끄집어 낼 필요가 있다.

[내용]

시작과 동시에 영화에 대한 바쟁의 견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지문은 주장·견해 지문인 것이다. 주장·견해 지문을 SSUL은 어떤 방식으로 읽어 내려가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주장·견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1. 어떤 것에 대한 누구의 주장·견해인지 ‘키워드’ 잡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지문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글의 화제를 잡는 것이다. 글의 초반부에서 ‘어떤 화제에 관해 주장·견해를 설명하는지’ 잡아야 한다.

2. 간간하게 끊고, 과하게 넘버링하며 읽기

주장·견해 지문의 특성상 견해가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나열된 각각의 항목들이 언뜻 보면 되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어서 그냥 나열된 각각의 항목을 몽개서 읽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에서 견해에 대해 물어볼 때 그렇게 몽개서 하나의 의미로 읽어버리면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할 정도로 넘버링하는 것’ 뿐이다. 안 끊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만, 과하게 끊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인지는 앞으로 이어질 설명에서 꼭 보여줄 것이다.

“일단 쪽 읽어보니 견해가 나열되는군. 그럼 일단 넘버링 하기 전에 이게 뭐에 대한 견해인지부터 파악해야 되는데..보니까 영화에 대한 견해네. 그럼 영화에 대한 바쟁의 견해를 쪽 넘버링 하면서 읽어야 겠다.”

- ①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
- ②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
-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③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로, ④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
- ⑤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